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보안인력 보호〉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98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31.
- (3) 회 부 일 : 2026. 4.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폭행 및 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폭행자 등을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및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 --.
<신설>	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제36조제1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制止)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현행	개정안
	<u>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의료기관의 시설 등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 등 진료방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등이나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제87조의2에서 이 중 진료방해나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폭행·협박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¹⁾

1)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 이는 「형법」상 폭행·협박의 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의료법상 의료행위 시 폭행·협박 등과 형법상 폭행·협박 등의 비교 >

구분	형법 (폭행·협박)	의료법 (의료행위 시 의료인 또는 환자 폭행·협박)
단순 폭행·협박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구분 없음)
상해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각주 참고2)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 시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그 대상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법」 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2018년 고(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³⁾ 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한 응급의료센터에도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74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2,963명, 258개 정신의료기관에 295명,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1,534명의 보안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의료법 등의 보안전담인력 배치 규정 >

법령명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지정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현황('25.12월 말) >

(단위:개소, 명)

종별 구분	기관수	보안 인력수
계	746	2,963
병원(100병상 이상)	365	542
종합병원	334	1,796
상급종합병원	47	625

*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정신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현황('25.6월 기준) >

(단위:개소, 명)

정신의료기관 기관구분	기관수	보안 인력수
계	258	295
1. 종합병원	7	14
2. 정신병원	239	267
3. 한방병원	1	1
4. 병원	11	13

*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현황('25.12월 말) >

(단위:개소, 명)

종별 구분	기관수	보안 인력수
계	414	1,534
권역응급의료센터	44	263
지역응급의료센터	138	5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	678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러나 이후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보안요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⁴⁾

4) 2022.6.16. 의협신문, “용인서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발생...의협 “엄중 처벌” 요구”

2022.6.26. KBS, ““아내 빨리 진료해달라” 60대 남편 대학병원 응급실서 방화”

- 제21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⁵⁾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대상에 보안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51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⁶⁾
-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약 2천건 내외(입건기준)의 폭력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폭행, 상해, 협박 및 손괴죄에 해당함.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발생 폭력범죄 현황 >

구분		소계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 행위등	공갈	손괴
2020	전체	265,768	32,904	139,361	1,209	21,214	210	7,398	5,281	58,191
	의료기관	2,194	351	1,461	33	141	1	36	29	142
2021	전체	232,661	28,453	115,942	1,165	21,058	240	6,484	5,131	54,188
	의료기관	1,917	330	1,239	28	133	1	43	22	121
2022	전체	245,286	26,806	125,217	1,145	21,567	276	6,745	6,904	56,626
	의료기관	1,823	323	1,159	34	135	2	35	20	115
2023	전체	234,561	22,916	119,527	1,011	22,956	342	6,930	6,910	53,969
	의료기관	1,793	256	1,157	31	133	7	35	20	154
2024	전체	219,798	19,578	115,254	956	24,190	316	5,713	6,003	47,788
	의료기관	1,773	251	1,145	42	143	7	34	12	139

자료: 경찰청범죄통계

2023.8.23. 국제뉴스, ““죽여버리겠다” 서울대병원 칼부림 흉기난동 발생, 보안요원 부상당해”

2024.10.6. 파이낸셜뉴스, ““여친 퇴원시켜줘” 병원서 흉기 꺼내 들고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2024.9.10. YTN, “병원 앞 난동 60대 체포...”불친절할 것 같아서”

2025.4.29. 경기일보, “성남 치과서 둔기 난동 60대 체포...3명 부상”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23290,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23285,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6) 당시 법무부는 보안인력 범위 및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응급의료 보안인력의 위험발생방지 및 신변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불명확하며, 벌칙 구성요건에 보안인력의 위험 발생 방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

□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요원은 현행 의료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특히 범인 제압과정에서 범인이 다칠 경우 보안요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의료행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을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자로 안내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1)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⑥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이 중 청원경찰의 경우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⁷⁾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및 그 외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보안요원의 경우 직무수행 시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음. 또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⁸⁾에 명시적으로 형의 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과 달리, 별도의 감형 조항은 없음.

민간보안인력의 경우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체포⁹⁾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

7)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9)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사한 불가피한 유형력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그러나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 일반인에 비해 직업적으로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범규범을 숙지해야 하는 책임 등을 고려할 때, 민간보안인력의 위법성조각사유 성립범위가 넓지 아니할 수 있음.¹⁰⁾

- 다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보안요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및 교육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의 감형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단속하고 관련 인력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보안인력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처벌 가능하며, 보안인력 업무 특성상 환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물리적 제지행위가 수반되는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의 내용 중 형의 임의적 감면은 사법부(재판부)의 전권 사항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10) 김준성,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형사책임의 범위',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권제1호, 2012

2) 대한의사협회 (찬성)

- 의료기관 내 보호대상의 보안인력을 포함하는 개정안 내용 관련,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나 현행 규정에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자 이외에도 보안인력, 수납·안내·행정 담당 직원 등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보안인력이 폭행·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 관련, 보안인력이 형사처벌을 우려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함.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투입되기 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면책적용 대상을 의료기관 근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병원협회 (찬성)

-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직접 대응하는 인력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해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안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중검토)

- 물리적 제지행위는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안인력의 역할과 대응기준, 교육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형사책임 감면 규정을 우선 도입하는데 우려가 있음.

- 현재도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제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직군에 대한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4